# 재단법인 백영장학재단 제9회 백영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재단법인 백영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, 제9회 백영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15일

재단법인 백영장학재단 이사장

#### - 아 래 -

#### □ 장학생 선발개요

O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3년 2월 15일 (수) 오후 12시 ~ 3월 8일 (수) 오후 6시까지

O 선발심사 : 2023년 3월 13일~3월 25일

O 확정통보: 2023년 3월 30일

O 장학생 선발분야 : 문화생활장학금 (1개 분야)

O 장학생 추천권자 : 학교장 등 소속 교육기관 장

□ 장학생 선발인원 : 00명 (고등학생 00명, 대학생 00명, 대학원생 0명)

## □ 장학금 종류 및 신청자격

## ○ 공 통

- ☞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(대학교, 대학원 포함)에 재학중인 학생
- ☞ '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'의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

## ○ 문화생활 장학금

- ☞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타에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(대학생·대학원생 포함)으로서 학교장 등 소속 기관장(대학교·대학원은 학과장)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☞ 가정형편 판단 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서

#### □ 신청방법

- O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·교사, 학생, 학부모가 신청
  - ※ 신청서류는 (재)백영장학재단 홈페이지(baekyoungfoundation.com) 게시판에 게시
  - ※ 신청서류는 수기 작성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접수 (날인 및 서명이 사본 또는 복사본 접수 불가)

- ※ 국외 학교 재학시 모든 증빙서류 한글 번역후 공증받아 원본 함께 재출 단 국외 유학생의 경우 국내 재학생 선발 인원 미달시 선발.
- 접수처 : 백영장학재단 사무국 (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52 성수hks빌딩 8층)
  - ※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접수기간 마감시까지 백영장학재단 사무국에 제출 (우편은 2023년 3월 8일 오후 6시 우편 소인까지 접수 인정 및 2023년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도달)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# O 신청서류

구 분	문화생활장학금	구 분
	∞ <b>장학금 지원 신청서</b> (자기소개서,서약서,학업계획서등)	재단서식
	∞ <b>추천서</b> (학교장 등 소속 기관장의 날인)	재단서식
	<ul> <li>☎ 전 학기 성적 증명서</li> <li>※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 증명서를, 대학・대학원 신입생은 2023학년도 수능성적 통보서 제출</li> </ul>	원본 1부
	<ul><li> ≫ 재학증명서</li><li> ※ 신입생은 등록확인서 등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</li></ul>	원본 1부
공 통	∞ <b>주민등록등본</b> (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앞자리만표시)	원본 1부
	∞ <b>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서 1부</b> (2022년 2학기 기준)	1부
	∞ 타 장학금 수혜(비수혜) 확인서	재단서식 또는 첨부가능
	∞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	1부
	⇔ 가족관계증명서	1부
	∞ 건강보험납입증명서	1부
	≫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동의서	재단서식
	⇒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	공통서류인
개 별 _	∞ 북한이탈주민 증명서	가족관계증
해당시제출	∞ 장애인가족 : 해당가족 장애인증명서	명서와 같이 첨부 시 유효
	☞ 다문화 가족 :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이 표시된 증명서	7,7,22

-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.

# □ 장학금 지급계획

- O 장학증서의 발급은 비대면 우편 발송
- O 장학금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예금계좌로 입금 (신청서류에 첨부된)
- O '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'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및 확인 시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함.
  - **※ 장학금 지급중지사유**(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제9조)
    - 1. 학교에서 징계처분(정학・퇴학)을 받은 때
    - 2.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
    - 3.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
    - 4.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(문화생활장학금 제외)
    - 5.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
- O 장학금 6회 분 지급 이후 7회분 지급 전까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의 학업진행여부의확 인 제출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을 중단함.